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1서식] <신설 2025. 8. 1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제작자등의 명칭	제작지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구분	인증[]	변경인증[]
	최초제작자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인증범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안내사항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